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5.(수)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용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순회권 의원 외 11명

2. 제안이유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 교육 지원 등 학교시설 활용성을 높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및 설치 시 고려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까지)
- 라.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 사립학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관계법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자치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5.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의견 반영(입법정책담당관실 법제조사팀)
- 규제심사: 규제심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교육청 감사관)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결과 ‘개선권고’ (교육청 감사관)
-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학생생활과)
- 해당부서의견 : 의견 없음(감사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4.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와 생활밀착형 사회시설 기반을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 이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있는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이하 “시설”)의 기능, 시설 설치 시 협의 내용·고려사항, 위탁 등 운영 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립학교의 적용 등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의 협력 사항, 학교와 지역주민 간 협력관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을 규정함.
- 안 제6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과 협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학생 사용시설과 주민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이동 동선 분리,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 적용 등 학교복합시설 건축 설계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경상북도 또는 시·군, 학교 등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외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청 행정과 규제심사에 따른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 이해충돌 방지 규정(제척·기피·회피)등이 반영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학교 또는 운영수탁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지원의 형평성이 확보되었으며, 사립학교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대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복합시설법”)이 시행되면서 도내 5개 학교가 주차장·수영장 등을 학교복합시설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안 사업으로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도내 학교복합시설 설치 제안 중인 학교 현황(2022년 9월 현재)]

학교명	학교복합시설	제안일	비고
포항 구룡포초등학교	주차장	2022.3.18	제안·협의
포항 연일초등학교	수영장	2022.3.18	제안·협의
포항 동해초등학교	수영장	2022.3.18	제안·협의
포항 양학중학교	주차장	2022.7.13	제안·협의
영양 영양초등학교	주차장	2022.9.14	의견회신요청
포항지역 학교시설복합화 추진협의체		2022.8.4	

- 앞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관리의 주체, 재원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청, 도청, 시·군 교육지원청, 시군, 학교,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기관과 학교, 주민의 의견 조정 등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향후 교육청과 시군이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학교 개방에 따른 외부인의 학교 불법 침입, 학생 안전 위협, 학습권 침해 등 사건·사고의 우려에 대하여 범죄예방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임.
- 그러나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부와 시설의 종류를 선정함에 있어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학생 수 및 지역의 인구 특성, 미래 예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대책이 요구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